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83 |
|----------|-----|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경제과】

-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록취소, 청문 등 대규모점포” 관련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맞도록 위임 내용을 삭제하고,
- “대부업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원거리 민원인의 편익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현지성에 맞게 시·군에 위임함

【기업지원과】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의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 관련 사무가 시·군에서 시·도사무로 변경되었으나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신고” 관련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사무로 이양되어 규칙으로 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음성군 관내 니트지방산업단지 관리권한을 음성군수에게 위임함

【환경과】

-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함

【보건위생과】

- ‘의료기관세탁물처리규칙’의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의 처리에 관한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함

【농산지원과】

- ‘농약관리법’의 개정으로 “농약관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 및 통지” 등의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시·도사무로 이양되어 규칙으로 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함

【축 산 과】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등의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함

【건축문화과】

-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주택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시·도사무로 이양되어 기존 규칙으로 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함

【지역개발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된 후 “도시관리 계획 결정업무” 사무를 시·도에서 운용함에 있어 원거리로 인한 처리지연 등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현지성에 맞게 시·군에 위임함

의안전문 : 따로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경제과 소관 1호의 “대규모 점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모두 삭제하고 “대부업등록 및 관리 권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경제과 | 1 | ○ 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 신고수리 라.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 통보 바. 영업정지 사.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제확인 공고 아. 등록취소 청문 및 행정처분 사전 통보 자. 등록수수료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리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동법 제5조제1항 동법 제5조제2항 동법시행령제3조 동법 제12조제1항 동법 제12조제5항 동법 제13조제1항 동법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 제13조제3항, 제4항 동법 제1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동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2조 |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기 업 지 원 과 | 4 |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권한 가. 사업(변경) 허가 나. 허가기준의 세부기준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 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 라. 지위승계 신고 마. 허가의 취소 등 바. 과징금 부과징수 사.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아. 안전관리자 선·하임 및 해임요구 등 자. 청문 차. 과태료 부과징수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제3조 동법 제3조의2 동법 제6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8조의2 동법 제10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36조의2 동법 제48조 동법 제34조 |
| | 25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 ○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사용량 신고 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 다.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제1항 동법 제8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동법 제100조제2항 |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환경과 소관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9호를 제8호로 하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하여 제9호로 하고, 제12호 내지 제31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제29호로 한다.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환 경 과 (속) | 9 |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보건위생과 소관 제24호 내지 제27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28호 내지 제37호를 제24호 내지 제33호로 각각 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농산지원과 소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며, 제5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분 야 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농 산 지 원 과 | 5 | ○ 다음규모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가. 시장·군수,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50ha미만의 논 경지정리사업, 밭 기반정비사업(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제외) 나. 소규모(10ha미만) 개간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44조제1항, 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 |
| | 6 | ○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 동법 제17조 |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축산과 소관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관광과 다음에 건축문화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분 야 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건축문화과 | 1 | ○ 민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단, 500세대 이상의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와 1,000세대 이상의 승인 및 취소는 제외) |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
| | 2 | ○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권한 (단, 시장·군수가 사업주체인 사업, 500세대 이상의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와 1,000세대 이상의 승인 및 취소는 제외) | “ |
| | 3 | ○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 감리업무 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 | 동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지역개발과 소관 제8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12호 내지 제17호로 하고, 제8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지 역 개 발 과 | 8 | ○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단 용도지역변경은 제외) | 동법 제30조, 제50조 |
| | 9 | ○ 100호 미만의 집단취락을 개발하기 위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 동법 제30조, 제37조, 제50조 |
| | 10 | ○ 기존면적포함 10만㎡ 미만의 산업형 및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의 결정(변경) | 동법 제30조, 제37조, 제50조 |
| | 11 | ○ 행정처분 및 명령 (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 동법 제133조 |

별표 6의 권한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일련 번호 | 단 지 명 | 수 임 기 관 | 근거 및 적용법규 |
|----------|-----------|---------|------------------------|
| 1 | 충주1지방산업단지 | 충주시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
| 2 | 광혜원산업단지 | 진천군수 | “ |
| 3 | 소이산업단지 | 음성군수 | “ |
| 4 | 니트지방산업단지 | 음성군수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 표

【별표 1】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거법령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거법령 |
| 경제과 (속) | 1 | ○ 대규모집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경제과 (속) | 1 | <u>< 삭제 ></u> | |
| | | 가. 개설등록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 | | | |
| | | 나. 영업개시등의 신고 | 동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 | | | |
| | | 다. 개설자의 지위승계 등 | 동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7조, 8조 | | | | |
| | | 라. 등록의 취소 등 | 동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 | | |
| | | 마. 개설자등에 대한 권고 | 동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 | | | |
| | | 바. 공공법인등에 대한 권고 | 동법 제22조 | | | | |
| | | 사. 시정명령 | 동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5조 | | | | |
| | | 아. 청문 | 동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40조 | | | | |
| | | 자. 보고조사 | 동법 제56조제1항 호, 제3항, 제4항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 | | | | |
| 차. 수수료, 과태료의 부과징수 | 동법 제63조, 제64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 | | | | | |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분야별 | 일련 | 사 무 명 | 근거법령 | 분야별 | 일련 | 사 무 명 | 근거법령 |
| | 번호 | | | | | | |
| 경제과 (속) | | < 신 설 > | | 경제과 (속) | 1 | ○ 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의 신고수리 라.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 통보 바. 영업정지 사.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 공고 아. 등록취소 청문 및 행정처분 사전통보 자. 등록수수료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 동법 제5조제1항 동법 제5조제2항 동법 제12조제1항 동법 제12조제5항 동법 제13조제1항 동법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 제13조제3항 제4항 동법 제1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동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2조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거법령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거법령 |
| 기 업 | 1~3 | <생 략> | | 기 업 | 1~3 | <현행과 같음> | |
| 지원과 | 4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 허가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나. 조정명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사업관리법 제3조 | 지원과 | 4 |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권한 가. 사업(변경)허가 나. 허가기준의 세부기준에 대한 제정·개정 및 폐지 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 라. 지위승계 신고 마. 허가의 취소 등 바. 과징금 부과징수 사.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아. 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해임요구 등 자. 청문 차. 과태료 부과징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제3조 동법 제3조의2 동법 제6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8조의2 동법 제10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36조의2 동법 제48조 동법 제34조 |
| | 5~24 | <생 략> <신 설> | | | 5~24 | <현행과 같음> | |
| | | | | | 25 | ○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 권한 가. 에너지사용량 신고 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 사용량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 다. 에너지 사용량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징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제1항 동법 제8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동법 제100조제2항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거법령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거법령 |
| 환경과 | 1~7 | <생 략> | | 환경과 | 1~7 | <생 략> | |
| | 8 | ○ 자동차운행의 규제 | 소음·진동규제 법 제30조 | | | <삭 제> | |
| | 9 | <생 략> | | | 8 | <현행과 같음> | |
| | 10 | ○ 운행차 점검에 관한 다 음사항(단, 도 광역단속 반에 의한 사항은 제외) | | | | <삭 제> | |
| | | 가. 운행차 점검실시 | 동법제3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 37조 | | | | |
| | 나. 운행차 개선명령, 사 용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 보고·수리 | 소음진동규제법 제3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 | | | | |
| | 11 | ○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 9 |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 |
| | 12~ 31 | <생 략> | | 10~ 29 | <현행과 같음> | | |
| 보 건 위생과 | 24 | ○ 의료기관 세탁물처리 업자 지정 등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규칙 제7조 | 보 건 위생과 | | < 삭 제 > | |
| | 25 | ○ 의료기관 세탁물처리 업자 지정의 취소 | 동규칙 제15조 | | | < 삭 제 > | |
| | 26 | ○ 의료기관 세탁물처리 업소 보고명령 및 지도점검 | 동규칙 제18조 | | | < 삭 제 > | |
| | 27 | ○ 세탁물처리업소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의 수보 | 동규칙 제13조 | | | < 삭 제 > | |
| | 28~ 37 | < 생 략 > | | | 24~ 33 | < 현행과 같음 > | |

| 현행 | | | | 개정안 | | | |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무명 | 근거 법령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무명 | 근거 법령 |
| 농산 지원과 | 1 | <생략> | | 농산 지원과 | 1 | <현행과 같음> | |
| | 2 | ○ 농약판매업의 등록에 관한사항 가. 농약판매업 등록 나. 등록취소등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 동법 제7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 | | | <삭제> | |
| | 3 | ○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 | 농약관리법 제25조 | | | <삭제> | |
| | 4~6 | <생략> <신설> | | | 2~4 | ○ 현행과 같음 | |
| | | <신설> | | | 5 | ○ 다음 규모의 원자계획의 인가· 고시 및 통지 가. 시장·군수·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50ha 미만의 논 경지정리사업 및 가관정비 사업 (단 2개이상의 시군 에 걸친 경우 제외) 나. 소규모(10ha 미만) 개 간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6항 동법시행규칙제14조 제16조 |
| | | | 6 | ○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 농어촌정비법 제7조 | | |
| 축산과 | 1 | <생략> | | | 1 | <현행과 같음> | |
| | 2 | ○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가축전염병예방보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동법시행규칙제22조 | | | <삭제> | |
| | 3 | ○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 을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 동법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 | | <삭제> | |
| | 4 | ○ 검사·조사·약물목록 또는 투약의 실시명 령 | 동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 | | <삭제> | |
| | 5~13 | <생략> | | | 2~10 | <현행과 같음> |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분야별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거법령 | 분야별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거법령 | | |
| 건 축 문화과 | <신 설> | | 1 | ○ 민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단, 500세대 이상의 16층이상 고층아파트와 1,000세대이상의 승인 및 취소는 제외) |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 | |
| | <신 설> | | 2 | ○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권한(단, 시장·군수가 사업주체인 사업, 500세대 이상의 16층이상 고층아파트와 1,000세대이상의 승인 및 취소는 제외) | “ | | |
| | <신 설> | | 3 | ○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 감리업무 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 | 동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 | |
| 지 역 개발과 | 1~7 <생 략> | | 1~7 | <현행과 같음> | | | |
| | <신 설> | | 8 | ○ 시장·군수의사업계획 승 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단 용도지역변경 제외) | 동법 제30조, 제50조 | | |
| | <신 설> | | 9 | ○ 100호 미만의 집단취락을 개발하기 위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 동법 제30조, 제37조, 제50조 | | |
| | <신 설> | | 10 | ○ 기존면적포함 10㎡의 미만의 산업형 및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계획의 결정 및 변경 | 동법 제30조, 제37조, 제50조 | | |
| | <신 설> | | 11 | ○ 행정처분 및 명령 (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 동법 제133조 | | |
| 8~13 <생 략> | | 12~17 | <현행과 같음> | | | | |

[별표 6]

시장·군수에게 관리권한을 위임하는 지방산업단지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일련 번호 | 단 지 별 | 수입기관 | 근거 및 적용법규 | 일련 번호 | 단 지 별 | 수입기관 | 근거 및 적용법규 |
| 1 | < 생 략 > | | 공업배치및공 장설립에관한 법률 제30조 | 1 | < 현행과 같음 > | |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 한법률 제30조 |
| 2 | <u>만송산업단지</u> | | " | 2 | <u>광혜원산업단지</u> | | " |
| 3 | < 생 략 > | | " | 3 | < 현행과 같음 > | | " |
| 4 | <u>< 신 설 ></u> | | " | 4 | <u>니트지방산업단지</u> | 음성군수 | " |

관계법령 발취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의개설등록)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를 등록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 제작업 또는 음반등 배급업의 신고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
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
6.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9. 공연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
10.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신청시에 제1항 각호의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등록신청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의 취소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자(이하 “대규모점포개설자” 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 ①대규모점포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라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업무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제13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 ①대규모점포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대규모점포를 양도한 때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조(분쟁의 조정) ①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군·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시·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시·군·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조정 효력) ①위원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판매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판매사업에 관한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의 취소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의 취소
3.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의 취소
5.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제45조(보고)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2.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취소 및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실적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실적

②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우수체인사업자·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
2. 유통사업자단체

제48조(수수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3.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5.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즉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5조(등록절차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점포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제공장소가 매장에 포함되는 경우의 등록대상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도·소매점포의 합계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도·소매점포의 합계면적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②제4항의 대상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할 수 있다.

1.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동일인일 것
2. 최인접 건물간의 거리가 50미터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③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④제3항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개설자 사업추진일정 영업개시 예정일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3.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각종 시설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업종의 구성
6.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재무구조 및 자금소요계획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규모점포관리자의 신고)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대규모점포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점상인 현황
3. 정관 또는 자치규약
4. 개설등록증원본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관리자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등록) ①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2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소를 모두 포함한다)
5.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인이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에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지체없이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록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는 동조 제2항 각 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②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 등) ①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의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가 관할하는 영업소에 대한 검사(공동검사를 포함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당해 명령의 내용을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당해 대부업자의 영업소 중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대부업자가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6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 대부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 당해 대부업자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6. 대부업자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당해 대부업자의 영업소 중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도지사는 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수수료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정한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한 자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당해 대부업자가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수수료 등) ①대부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영업소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써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라 함은 검사일을 기준으로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받는 검사수수료에 대하여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써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등)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생략

③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고자 할 때에는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허가신청이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3조의2(허가의 기준)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연결도로, 도시계획 그 밖의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5.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도 적합할 것
 - 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 나. 임차계약 등에 의하여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건설·관리하는 기간동안에는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임차계약 등에 의하여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이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휴지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스용품제조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승계) ①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용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4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위의 승계자(액화석유가스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

제8조(허가의 취소등) ①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때
4.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한 때
7.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의 최고액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때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월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과징금) ①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이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0조(안전관리규정) ①사업자등은 그 시설 및 용기·가스용품등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개시를 할 때에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등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가스용품의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허가관청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허가관청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및 공사의 의견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관리자) ①사업자등과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사용 시설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당해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과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당해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조정명령)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및 안전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의2(청문) 허가관청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2003.9.29>
- 1의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
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등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등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가스용품제조사업자
5.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등
6.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 6의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6의3.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7.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 7의2.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 7의3. 제34조의4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 8.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 2.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수요자
- 2의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시설로 전환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시공자
- 2의4.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 또는 변경한 액화석유가스수요자
-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공급방법에 위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사용자
- 5.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 6.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
-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
- 8.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사업자단체·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 9.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고 발생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③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사용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사용량의 신고등)①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자(이하 “에너지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당해연도의 에너지사용 예정량·제품생산 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 에너지 이용합리화실적 및 당해연도의 계획

제89조(보고 및 검사 등)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리대상자,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및 검사대상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삭제

④제80조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00조(과태료)①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1~8 생략

9. 제25조 제1항·제58조제7항 또는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경우 연도별 생산·수입 또는 판매실적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영업실적(연도별 계약실적을 포함한다)

②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험능력화보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3.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이행에 관한 사항
6.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검사이행에 관한 사항
7.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검사이행에 관한 사항
8. 법 제58조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등의 신고이행에 관한 사항
9.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10.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이행에 관한 사항

【소음진동규제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차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속도의 제한·우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은 운행차의 소음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시장등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그 자동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린 경우 또는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제48조(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대기환경보전법 】

제37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 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제4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삭제<1995.12.29> ③삭제<1999.4.15>

④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삭제

【 의료기관세탁물처리규칙 】

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 ①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 시설 및 장비내역서
2. 작업장평면도(기계·기구의 배치내역을 포함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탁물처리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중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작업장 면적의 증감
 - 나. 중요세탁기의 증감
 - 다. 소독시설의 변경
3. 영업장 소재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신고필증 뒷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로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세탁물처리실적 제출) ①의료기관 또는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전년도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세탁물처리업자세탁물처리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세탁물처리업자의 지정의 취소) 삭제

제18조(지도 및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업자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

제3조(영업의 등록등) ①제조업,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 기준에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때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제25조(농약관리에 관한 보고등) ①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출입 식물방제업자에게 농약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인력, 시설, 장비등에 대하여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4조(판매업의 등록신청등)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의 명세서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농어촌정비법】

제17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4조(환지계획의 인가) ①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4일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안의 토지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지계획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정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성명·지번 및 지목등의 단순한 기재착오 및 누락
2.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의 변경 또는 설정

⑧ 인가권자는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정정 또는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및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14조(환지계획의 공고·고시)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6조(환지계획인가통지)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지계획인가서 사본에 제15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와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등기소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법 제44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 2서식의 환지계획정정(변경)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정 또는 변경전·후 환지총계표
2. 해당 정정 또는 변경전·후 환지계획일람표
3. 해당 정정 또는 변경전·후 환지계획서
4. 해당 정정 또는 변경전·후 종전토지원부
5. 해당 정정 또는 변경전·후 환지토지원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록 또는 투약의 실시등)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주사·약물목록 또는 투약
2. 주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표시”라 한다)
3. 주사 또는 투약의 금지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 시설과 인접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가축을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하는 조치
2.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이동제한 또는 소독하는 조치
3.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하는 조치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가축의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가축사육시설이 명령위반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당해 가축사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절차·기준 그 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격리·역류·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업 영업자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발굴의 금지) ①제22조제2항 본문·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이를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몰한 토지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①법 제19조제2항(법 제28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콜레라·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뉴캐슬병·소해면상뇌증 또는 시습만성소모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가축에 대한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에 의하여 당해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는 기간은 6월로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당해 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소유자등과 폐쇄 명령일자를 관할 시·도지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의 사육제한명령) ①법 제19조제2항(법 제28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외의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당해 가축에 대한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인접한 지역에서 사육된 가축의 소유자등이 당해 가축에 대한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3.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지연한 경우
4. 그 밖에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은 사육제한기간과 그 기간중에 감축할 가축(이하 "감축대상가축"이라 한다)의 수를 정하여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축대상가축의 수는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받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 전체 가축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1. 사육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감축대상가축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까지 감축
2. 사육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사육제한기간의 만료일까지 감축대상가축중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축된 가축외의 가축의 감축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표시의 명령을 하거나 주사 또는 투약의 금지를 명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1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4. 실시기간
5. 그 밖에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표시, 주사 또는 투약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는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검사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2. 주사 및 주사표시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3. 약물목욕 또는 투약 증명서 : 별지 제5호서식

③농림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표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범위·방법·기준, 명령이행여부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①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사람 또는 차량
4. 기간
5. 그 밖에 이동제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송을 위하여 항구·공항·기차역 또는 정류장에 소재하고 있는 가축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을 명한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가축·사람 또는 차량에 대하여 격리·역류·이동제한·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매몰지의 표지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몰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발굴을 허가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해 가축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을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소각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말한다.

1. 매몰된 사체 또는 오염물건과 관련된 가축전염병
2. 매몰된 가축 또는 물건의 종류
3. 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시·도지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상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의하여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⑦시·도지사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수행중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당해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주택법시행령】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 ③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

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④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라. 제2호 다목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 카.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 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라. 제1호 마목·사목 및 아목의 서류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바.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2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그 밖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하되,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법 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만이 진행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동안 배치한다.

④감리자는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⑤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감리자의 교체 등) ①법 제2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리업무 수행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묵인한 경우
2.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에 1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기간계산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별로 상주시켜야 할 기간에 각 감리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다.
4.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감리자 및 시공자·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관리권자등) ①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장관
 2. 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의 관리업무에 한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외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가 산업시설의 입주를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 ④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산업단지안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등)** ①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②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⑤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 때
 2.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 ⑥관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입주기업체협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